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716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박홍배 · 손명수 · 허성무  
안태준 · 전용기 · 이수진  
김문수 · 정태호 · 최기상  
이강일 · 김원이 · 김태선  
김성희 · 박상혁 · 박지원  
안규백 의원(16인)

##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하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등이 불가피함에도,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

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정시설, 조성사업, 조성부지, 조성주변지역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조성사업 및 지업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성후보지 선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및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조성사업의 방식 및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9조 및 제10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시행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시설”이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이전사업: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

나. 신축사업: 교정시설을 신축부지에 설치하는 사업

3. “조성부지”란 다음 각 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이전부지: 교정시설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나. 신축부지: 교정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부지

4. “중전부지”란 교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5. “조성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이전주변지역: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 중 제6조에 따른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

나. 신축주변지역: 신축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 중 제6조에 따른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

6.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조성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7.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성부지의 확보 및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조성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조성부지의 선정 등

- 제5조(조성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이전후보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시설의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건의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단수 또는 복수로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교정시설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수요의 증가 등 교정시설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시설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로 교정시설 신축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 이전후보지 또는

신축후보지(이하 “조성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조성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조성후보지 선정 결과를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성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 ① 교정시설 조성부지의 선정과 조성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이하 “조성사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성사업위원회는 조성(이전 및 신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이 되는 교정시설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성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조성후보지 거주 주민 중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조성후보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조성후보지에 인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 종전부지에 인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조성사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⑥ 조성사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성부지 선정에 관한 심의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조성주변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심의
  3. 조성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심의
  4. 조성주변지역의 결정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조성 및 조성주변지역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조성사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성사업위원회에 조성사업 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사업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조성후보지 중 조성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성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② 조성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후보지
2. 조성·운영할 교정시설의 종류와 규모
3. 조성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
4. 조성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
5.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

제8조(조성부지의 선정) ① 조성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조성 유치를 신청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조성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에서 조성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부지를 선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조성부지 선정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성부지가 선정되면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선정되지 아니한 조성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제6조제3항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중 선정되지 아니한 조성후보지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조성사업의 방식 등

제9조(조성사업의 방식 등) ①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5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방식
2.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및 제55조(양여)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교정시설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법무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

3.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조성주변지역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는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조성하는 교정시설의 종류·규모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종전부지 또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

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4장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제11조(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조성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조성주변지역의 주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조성부지 안의 공간·설비 등을 제공받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가 작업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원계획은 조성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 · 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조성사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 · 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조성사업시행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원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수용) ①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및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5장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조성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등) ①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시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조성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자치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지역에 조성된 교정시설에 관한 채용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시·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응시요

건으로 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정시설 통합조성에 따른 특례) ① 교도소와 구치소(각 지소를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이전하거나 통합하여 신축하는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조성이 조성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9조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단일 교정시설 조성사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장 종전부지의 처리

제21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23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성사업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부지가 선정되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등을 한 것으로 본다.